

기숙사 사생수칙

제정	
개정	2018. 7. 30
개정	2018. 10. 01
개정	2018. 12. 10
개정	2019. 01. 07
개정	2019. 06. 10

제1조(명칭 및 목적) ① 이 수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사생수칙(이하 '수칙')이라 한다.

② 이 수칙은 사생들이 기숙사에서 지켜야할 사생수칙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원칙)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, 특히 사내에서의 음주가무, 흡연, 도박, 폭력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사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 된다. 단, 직원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방문객(부모님 등)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관리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패용해야 한다.

③ 사생은 배정받은 방 및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.

④ 관장 및 직원은 필요 시 사내 출입인원의 사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관계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3조(생활점검 및 점호) ① 사생은 안전관리, 실내 청결상태, 시설·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·지도 및 사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② 생활점검은 지정한 요일에 사생회 주관으로 실시한다.

③ 사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원점검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보건 및 위생)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특히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질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생은 이를 사무실에 알리고, 즉시 치료 및 격리 등 기타 적절한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.

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
④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
⑤ 사생은 기숙사 실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없다.

제5조(게시물) 기숙사 내 게시물 부착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용물 사용)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, 파손이나 손실 발생 시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순찰) 관장 및 관계직원은 수시로 각 호실에 대하여 순찰을 할 수 있으며, 이때 모든 사생은 순찰활동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출입 및 외박)① 사생은 정해진 기숙사 출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 단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구분	학기 중	방학 중
출입가능시간	당일 05:00~익일01:00	당일 05:00~당일24:00
출입제한시간	01:00~ 05:00 (출입문 폐쇄)	00:00 ~ 05:00 (출입문 폐쇄)

출입제한 시간에도 건강상의 이유와 당직근무자의 허락이 있을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하다.

② 사생은 사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대학 종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, 야간 실습실 사용으로 인한 외박의 경우에는 실험실습실 사용신청 자료로 대신 한다.

제9조(상·별점 제도)① 상·별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상·별점은 정도에 따라 <상·별점 기준표>에 의거 점수를 부과한다.

③ 누적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여 강제퇴사 조치하고, 조치결과를 스쿨에 통보한다.

④ 누적별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고,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하며, 차 학기 입사를 불허 한다.

⑤ 수칙위반 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별점을 부과 한다.

⑥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 상·별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상·별점 현황을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.

⑦ 상·별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사무실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부여된 상·별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⑧ 수칙 위반 시 별점 부여와 봉사활동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.

⑨ 누적 별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<상·별점 기준표> 19-06-10 기준

■ 상점 기준표

순	세 부 내 용	상 점	비 고
1	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기여한 사생	3~10점	판단 후 결정
2	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사생으로 사생의 추천에 의해 관장 또는 직원이 인정한 사생	1~3점	
3	기숙사 별점 내용을 신고 또는 제지한 사생	3점	신원 절대 보장
4	생활점검 시 청결하게 관리한 사생	2점	
5	기숙사 주최 행사 참여 사생(단, 상점부여 행사에 한함)	1~3점	
6	기숙사를 위한 봉사활동 참여 사생	1~3점	
7	기숙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한 후 사무실에 신고한 사생	1점	

■ 별점 기준표

순	세 부 내 용	별 점	비 고
1	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행한 사생 (예시) - 기숙사 공동생활 유지를 위한 사생회, 행정실의 정당한 활동에 지장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- 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숙실 내 과도한 소음 유발, 복도 이동간에 반복 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- 퇴실 후 숙실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- 생활점검시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지속하는 경우 등	최대 15점까지	판단 후 결정
2	성희롱, 성폭력 행위를 한 사생	15점	강제퇴사
3	사내 기물,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	15점	강제퇴사+변상
4	절도·방화·폭행,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 반입 행위	15점	강제퇴사
5	남·여 사생의 호실 출입행위	15점	강제퇴사
6	흡연(전자담배 포함), 음주 행위를 한 사생	15점	강제퇴사
7	누적별점 15점 이상인 사생	강제퇴사	
8	누적 별점이 10점 이상인 사생(다음 학기 입사불가)	봉사활동	
9	도박, 취사 행위를 한 사생	10점	봉사활동
10	비사생을 숙박/입실한 행위(비 사생은 스쿨 통보)	10점	비사생과 봉사활동 실시(3시간)/ 봉사활동 완료시 3점 감해줌
		7점	숙실 입실 시 호실 전체
11	지정된 출입구, 배정된 호실(자리)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	7점	
12	비상대피로(복도, 계단, 출입문 등) 확보에 방해를 주는 행위 (빨래건조대, 우산, 개인 사물 등)	5점	
13	무단 외박을 한 행위	3점	1일 기준
14	필참을 공지한 기숙사 프로그램에 불참한 경우 (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등 기타)	5점	
15	실습실 종료 후 미 복귀한 행위	3점	미확인도 동일
16	생활점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(예시: 점검 중 이동, 숙실정리 정돈 불량, 보관 기간이 경과한 음식물 냉 장고 보관 등)	2점	행위별로 각각 부여
17	허가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행위	2점	당사자
		1점	룸메이트
18	고성방가, 쓰레기 무단투기	5점	
19	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및 미 반출	2점	
※ 누적별점 15점 이상일 경우 :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강제퇴사 조치 후 스쿨에 통보 ※ 누적별점 10점 이상일 경우 :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			

서 약 서

학 사: 청강학사 () / 비전학사 ()

호실 - 자리번호:

성 명:

상기 본인은 기숙사 운영규정 및 사생수칙의 내용에 동의하고,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201 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기숙사 관장 귀하